

제433회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회의록
(임시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제 4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6년3월27일(금)

장 소 행정안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65)
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26)
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주진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961)
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나경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447)
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61)
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28)
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458)
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526)
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한민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688)
1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46)
1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08)
1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45)
1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59)
1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04)
1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24)
1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854)
1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광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196)
1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674)
1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710)
2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323)
2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56)
2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81)
2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28)
2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31)
2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77)
2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54)
2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18)
2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983)

2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최보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668)
3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 의원·용혜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350)
3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균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674)
3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민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447)
3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 의원·용혜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391)
3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461)
3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431)
3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356)
3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865)
3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114)
3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142)
4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770)
4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642)
4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063)
4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184)
4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44)
4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202)
4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833)
4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 의원·김영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319)
4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491)
4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353)
5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018)
5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정혜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188)
5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218)
5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233)
5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용혜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301)
5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316)
5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342)
5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465)
5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500)
5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한창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758)
6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809)
6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정혜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847)
6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정춘생 의원·정혜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216)
6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문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475)
6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598)
6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643)

6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699)

상정된 안건

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65) 5
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26) 5
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주진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961) 5
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나경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447) 5
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61) 5
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28) 5
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458) 5
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526) 5
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한민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688) 5
1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46) 5
1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08) 5
1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45) 5
1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59) 5
1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04) 5
1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24) 5
1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854) 5
1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광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196) 5
1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674) 5
1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710) 5
2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323) 5
2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56) 5
2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81) 5
2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28) 5
2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31) 5
2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77) 5
2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54) 5
2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18) 5
2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983) 5
2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최보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668) 5
3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 의원·용혜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350) ... 5
3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균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674) 5
3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민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447) 5
3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 의원·용혜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391) ... 5
3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461) 5
3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431) 6
3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356) 6

3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865)	6
3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114)	6
3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142)	6
4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770)	6
4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642)	6
4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063)	6
4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184)	6
4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44)	6
4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202)	6
4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833)	6
4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 의원·김영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319) ...	6
4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491)	6
4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353)	6
5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018)	6
5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정혜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188)	6
5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218)	6
5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233)	6
5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용혜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301)	6
5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316)	6
5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342)	6
5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465)	6
5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500)	6
5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한창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758)	6
6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809)	6
6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정혜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847)	6
6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정춘생 의원·정혜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216)	6
6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문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475)	6
6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598)	6
6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643)	6
6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699)	6

(10시24분 개의)

○소위원장 윤건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4차 공직선거법 및 지방선거구제 개편 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여야 간사 간 사전 협의에 따라 선거보조금 환수, 여론조사기관 감독, 장애인 및 재외국민 투표 편의 등에 관한 법률안을 심사하고 지난 회의에 이어 선거구 획

정 및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법률안도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률안 심사는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듣고 정부 측 답변을 들은 다음 위원님 간에 의견을 자유롭게 교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65)
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26)
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주진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961)
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나경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447)
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61)
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28)
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458)
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526)
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한민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688)
1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46)
1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08)
1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45)
1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59)
1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04)
1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24)
1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854)
1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광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196)
1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674)
1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710)
2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323)
2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56)
2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81)
2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28)
2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31)
2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77)
2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54)
2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18)
2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983)
2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최보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668)
3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 의원·용혜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350)
3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군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674)
3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민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447)
3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 의원·용혜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391)
3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461)

3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431)
3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356)
3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865)
3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114)
3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142)
4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770)
4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642)
4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063)
4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184)
4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44)
4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202)
4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833)
4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 의원·김영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319)
4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491)
4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353)
5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018)
5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정혜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188)
5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218)
5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233)
5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용혜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301)
5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316)
5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342)
5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465)
5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500)
5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한창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758)
6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809)
6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정혜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847)
6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정춘생 의원·정혜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216)
6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문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475)
6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598)
6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643)
6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699)

(10시25분)

○소위원장 윤건영 의사일정 제1항부터 의사일정 제66항까지 이상 총 66건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오늘 법률안 심사를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강동완 사무차장께서 출석하셨습니다.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안녕하십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차장 강동완입니다.

존경하는 윤건영 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국정 심의에 바쁘신 가운데에도 우리 위원회 소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사해 주시는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오늘 심사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의 입장을 성실히 답변드리고 또 지적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밀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감사합니다.

또한 배포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행정안전부 자치분권국장 등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하고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심사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법률안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정춘생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잠깐 해도 될까요?

○소위원장 윤건영 예, 정춘생 위원님.

○정춘생 위원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시다만 안전들 중에 빠진 안전들이 있어서 같이 올려서 심사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또 빠져 있어 가지고요.

지난번 결선투표제하고 제주도의회 교육의원 비례로 전환하는 법 그리고 돈 공천 방지, 금품수수 관련 처벌 강화하는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이게 또 빠져 있거든요. 같이 올려서 심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소위원장 윤건영 제가 법안 심사와 관련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제주 교육의원 건은 오늘 쟁점 토론 시간에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지금까지 법안 심사를 어떻게 하는지 프로세스에 대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여야 간사가 각각 법안 심사를 희망하는 법안 리스트를 양당 간사가 제출합니다. 제출해서 현재까지는 그 법안 리스트 중에 공통된 법안만 우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통된 법안이라는 것은 양당 모두 지금 당장 논의를 하자라는 것이기 때문에 논의하는 데 있어서는 이견이 없다라고 봐서 이 법안들만 우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방금 정춘생 위원님 말씀하신 법안들은 어딘가에서는 제안을 안 한 겁니다. 공통 법안이 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고요.

그런데 여야 위원님 공히 마찬가지로입니다. 내가 낸 법안이 왜 심사가 되지 않냐라는 의구심을 가질 텐데 현재까지는 그러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계속 이 방식을 쓸 거냐? 아닐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정개특위가 한시적인 조직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위원님들께서 생각하시는 것들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이 방식을 어떻게 할지는 저희가 여야 간사 간에 협의를 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구할 텐데요.

참고로 오늘도 법안이 4개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안 4개에 대해서도 조금 전에 존경하는 서일준 위원님께서 오늘 처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좀 무리가 있다라고 하시는 법안이 1:2:3번 법안이고 장애인 편의 제공 관련 사항에 대해서만 오늘 집중적으로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위원장으로서 처리를 어떻게

할지 조금 답답한 상황인데요.

○정춘생 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소위원장 윤건영 그래서 법안 처리 프로세스와 관련해서는 다시 한번 여야 간사 간에 협의를 할 텐데 개인적인 아이디어로는 1소위가 1소위 전체회의보다는 소소위를 구성하는 것도 방법이겠다 싶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걸 여야 간사 간에 협의를 해서 다시 의논을 할 텐데요 1소위 위원들 전체 한 20여 명 가까운 분이 모여서 법안소위를 하려다 보니까 너무 무겁고 신속하지 못한 것 같아서 소소위를 구성하는 방법 등을 포함해서 다시 의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공지해 드린 것처럼 오늘은 법안 심사와 주요 쟁점에 대한 토론 두 가지로 나눠서 할 텐데요. 시간 배분을 제가 적절하게 해서 앞단에 법안 심사를 좀 하다가 일정 시간이 되면 주요 쟁점에 대한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네 가지 법안 다 토론을 못 할 수도 있다라는 양해 말씀을 미리 구하겠습니다.

서일준 위원님.

○서일준 위원 서일준 위원입니다.

사실 정개특위에서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 거나 하려고 하는 이런 법안들이 대부분 행안위에서 다 처리를 해야 되고, 정개특위가 평상시에 운영이 됐다면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처리를 해야 되는 그런 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정개특위가 지방선거 목전에 구성이 돼 가지고 사실상 정개특위의 역할은 지금 현재 일선에 공천 신청을 하고 공천 확정이 되고 그다음에 예비후보 등록을 하고 하는 이 후보자들이 충분히 선거운동 할 수 있도록 선거구 확정하는 게 포인트가 돼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정치개혁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시간을 충분히 줘야 되는데 두지 않고 같이 가니까 자칫 잘못하면 졸속 입법이 되지 않을까 저희들은 그런 염려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혹시 의사진행발언인가요?

○임미애 위원 예.

제가 부득이하게 먼저 이석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선거구 확정과 관련된 말씀을 하셔서 연관돼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 의견을 먼저 말씀드리고 제가 자리를 떠나면 어떨까 싶어서.....

○소위원장 윤건영 임미애 위원님 말씀은 원래 후반에 논의하기로 했던 주요 쟁점에 관한 내용을 사정상 먼저 이석을 해야 되니까 의사진행발언을 겸해서 먼저 말씀하시겠다고, 양해되신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임미애 위원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서일준 간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선거구 확정 문제가 굉장히 시급합니다. 그런데 제가 끝까지 있지를 못해서 먼저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 가는데요.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번 정개특위의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에서도 선거구 확정과 관련해서 어떻게 하면 무투표 당선을 줄이고 지방의회의 다양성을 확보할 것인가, 그 정신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 이것이 정개특위의 목적 중의 하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회의에 참여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선거구 확정 논의가 아직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지도 않고 그런데 현장에서는 많은 후보들이 이미 공천 과정을 거치고 있고 합니다. 그런 상황을 비춰 본다면, 지금 특히 기초의회의 경우 많은 권한이 시도의회로 넘어가 있기는 한데요. 기초의회 선거구 확정에 대한 의견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기초의회 선거구가 전국에 1030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3인 선거구가 438개고요. 4인 선거구가 43개입니다. 그런데 지금 3인 선거구 2개를 합쳐서 2인 선거구 3개로 만든다거나 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쪼갬다든가 이런 이야기가 현장에서 굉장히 많이 오고 갑니다. 그러다 보니 후보자들 입장에서든 내 선거구가 어떻게 변화될지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 선거구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투표 당선을 줄이기 위해서는 더 이상 2인 선거구로 선거구가 회귀되는 것은 막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3인 이상의 선거구는 유지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차원에서 22년 선거 때 3인 이상 선거구로 확정되었던 곳에 대해서는 더 이상 2인 선거구로 분할하려고 하는 시도가 없도록, 지방의회에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거구 확정과 관련된 법안의 부칙으로 달아 줄 것을 위원들께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배준영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배준영 위원 의사진행발언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진행 순서가 위원장님 말씀을 들어 보면 법안 심사를 먼저 하고 선거구 확정 은 나중에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소위원장 윤건영 선거구 확정이 아니라 지난번에 논의하지 못했던 주요 쟁점 네 가지 사항.

○배준영 위원 제가 볼 때는 주요 쟁점을 먼저 하는 게…… 지금 선거구 확정도 안 돼 가지고 고통받고 있는 여러 후보자들을 생각해서라도 그게 먼저가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먼저 의사진행발언을 했습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애초 취지는 정개특위에 올라와 있는 법안들이 많아서 무쟁점 법안들은 조기에 처리하고 가자라고 했는데요. 배준영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습니다. 혹시 동의가 들어오시면, 저 방식도 나쁜 방식은 아니어서요.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렇게 진행할까요? 그러면 시간 배분은 주요 쟁점에 대해서 전반부에 토론하고 법안에 대한 심사도 오늘 들어가야 됩니다. 법안은 제가 걱정하게 알아서 배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동의하시는 걸로 알고 순서를 바꿔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3항부터 의사일정 제66항까지 선거구 확정 및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 안건은 지난 소위에서와 마찬가지로 지방선거 실시 전 필수적으로 정해야 할 기초 의회의원 정수 증원 범위 및 기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선거구 획정, 3번 헌법불합치 우려 지역 해소, 4번 제주도의회 교육의원 제도 일몰 등에 대해서 우선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해당 주제를 중심으로 논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께서 해당 주제에 대해 소위 별도 배부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문상 전문위원입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구 획정 관련 논의 필요사항입니다.

첫 번째는 기초의회의원 정수 증원 범위 및 기준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현행법은 시군구의회의 최소정수를 7인으로 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개특위 논의 경과를 바탕으로 시도별 총정수만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6회, 7회, 8회 지방선거의 경우 각각 21명, 29명, 61명이 증원되어 온 상황입니다.

밑의 표는 지난 8회 지방선거 대비해서 25년의 각 시도별 인구 기준을 제시해 드렸습니다. 인천하고 경기도하고 충남은 증원이 된 반면에 나머지 시도의 경우에는 감소 또는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2쪽입니다.

두 번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선거구 획정 관련 사항입니다.

종전 지역구를 기준으로 광주광역시 의회의원 정수가 20명이고 전남도의회 정수는 55명으로 광역의회의원 정수는 약 2.7배의 차이가 있습니다. 기초의원인 경우에도 광주광역시 68명, 전라남도 247명으로 약 3.6배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격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통합지역의 선거구 획정 및 의원정수 산정 과정에서 지역 간 형평성 및 대표성 확보를 위한 추가적인 방향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첫째, 해당 지역에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는 방안과 두 번째, 종전 광역자치단체의 선거구를 그대로 인정하는 방안 그다음에 세 번째, 통합 자치단체 전체를 기준으로 평균 인구를 산정하여 선거구를 획정하는 방안 등 다양한 대안이 논의 가능합니다.

관련 법안으로는 김문수 의원안이 현재 제출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쪽의 헌법불합치 우려 지역 처리 방향과 관련해서 현재 헌법불합치 관련 인구편차 미달 선거구가 9개가 있습니다.

이것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첫째, 조정범위 내에서 정수를 확대하거나 조정범위 자체를 확대하는 등 정수 확대로 인구편차 기준을 낮추는 방안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도서·산간지역 등 인구 과소지역과 지리적 특수성, 지역 대표성을 인정하는 방안이 함께 고려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두 번째는 인접 기초자치단체의 일부 또는 전부와 병합하는 방식의 고려가 가능한데 이것과 관련해서는 현행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제주도의회 교육의원 및 교육위원회 제도 일몰 관련입니다.

현행 제주도의회의원 정수는 45명 이내에서 정해지는데 지난 8회 지방선거 기준 현재 지역구 32명, 비례대표 8명과 교육의원 5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도의 교육의원 제도가 금년 6월 30일 일몰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에 따른 의석 재배분 및 대체 제도 마련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행정안전부와 법제처의 해석에 따르면 타 지방자치단체의 사례들을 고려할 때 제주도의회 정수를 40명으로 산정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와 관련해서는 관련 법안, 교육의원 5명을 비례대표 의석으로 확대해서 도의원 정수를 유지하는 김한규 의원안, 정춘생 의원안이 제출돼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선관위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지난번 회의 때 저희들 입장 다 일차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쟁점 법안으로 올라온 법안에 대해서는 정개특위에서 입법정책적 결정해 주시면 되고 그때 말씀 못 드렸던 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비례대표 의석비율 확대와 관련한 의견입니다.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저희들 동의를 하고요. 이 부분도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이지만 의견을 잠시 말씀드리면 제주도 같은 경우는 2006년부터 제주특별법에 따라서 비례대표 의원 비율이, 다른 시도는 비례대표 비율이 10%인데 반해서 제주도는 교육의원을 제외한 총인원수의 20%로 규정해서 운영돼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일몰이 되는 교육의원 정수 5명 중에 일부 또는 5명 전원을 비례대표로 전환해서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부탁드립니다.

○정춘생 위원 위원장님, 쟁점 하나씩 따로따로 했으면 좋겠어요. 다 섞어 버리면 이게 정리도 안 되고 진행이 계속 걸돌 것 같아서요.

○소위원장 윤건영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이견이 없으시면 하자는 대로 하지요.

첫 번째, 기초의원 총정수에 대해서 말씀 주십시오.

존경하는 임미애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이, 기초의원 총정수와 관련된 부칙조항을 명시하자라는 말씀을 아까 주셨고요.

배준영 위원님 이야기해 주십시오.

○배준영 위원 제가 이 회의를 통해서 너무 여러 번 말씀드려서 또 말씀드리기 죄송하긴 하지만 기초의원이라는 것은 좀 거칠게 얘기하면 동네 골목골목을 다니면서 거기 계신 분들의 민원도 들어 주고 권익도 챙기면서 군·구의 의결사항, 예산이랄지 조직을 챙기고 그러시는 분들인데 이거야말로 인구 비례에 맞춰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선관위에서 전국의 인구라든지 이런 걸 비례해 갖고 현저하게 부족한 지역 같은 경우에는 대표하는 의원들이 평균치와 크게 벗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안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제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선관위에서 말씀 주실 것 있으신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배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는 사실은 기초의원 정수가 지금 7명으로 운영되는 작은 자치단체들이 많다 보니까 평균을 어떻게 잡을지 그리고 우리가 공직선거법 별표3에서 정하는 기초의원 총정수를 2988명으로 할지 더 늘릴지가 결정이 돼야 그것에 합당한 의견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배준영 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을 더 하면 사실 광역의원은 명확한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그렇습니다. 광역의원은 지금 비례대표 비율을 늘리자고 하면 그것에 맞춰서 정원이 늘어나면 되는데……

○배준영 위원 그러니까 광역의원은 자치구의 숫자라든지 국회의원 숫자라든지 이런 것에 연동해서 하게 돼 있잖아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그렇습니다.

○배준영 위원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기초의원도 그런 기준을 당연히 정해야 될 것 같은데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그런데 지금까지는……

○배준영 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그랬는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그러면 아예 법률 자체를 새롭게 뜯어고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배준영 위원 아니, 그래도…… 인원을 정하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해마다 주먹구구식으로 조금씩 늘리고 늘리고 할 겁니까?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 주고 인구 비례에 맞게 할 수 있도록 안을 제시하는 게 정부의 역할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국회의원이나 광역의원들 다 있듯이 기초의원도 그런 원칙을 정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소위원장 윤건영 마무리하시고요.

그러니까 배준영 위원님 말씀은 기초의원 총정수에 대해서 광역의원이나 여야 합의로 해 왔던 기존 관례보다는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 내는 게 필요하다라는 말씀의 취지였던 것 같고요. 그와 관련해서 선관위에서 의견이 있으시면 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식 위원 제6회, 7회를 보면 2개가 같은 기준이 적용됐습니다. 그래서 시도의회의원이 증원된 시도를 대상으로, 그중에서 시도 내 인구가 또 10% 이상 증가해야 되는 두 가지 기준을 가지고 했었는데 지금 우리나라 인구 현황을 보면 총인구가 지금 거의 정점에 다다라 가지고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 정체된 그런 상황인데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하면 좀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제8회에 했던 것처럼 시도의원 선거구가 신설된 지역에 1명씩 기초의원을 증원하는 방법, 저는 이 기준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경북·인천·강원에 1명씩 추가하는 것은 그 당시에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그런 모양이지요?

○소위원장 윤건영 답변 가능하시면 선관위에서……

○이상식 위원 하여튼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제8회 지방선거의 기준을 따라서 시도의원 선거구가 신설된 지역에 증원하는 방법, 이 안을 지지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8회 지방선거 때는 사실 저희 선관위에서는 참여를 못 했고요 행정안전부에서 참여해서 증원하는 선거구를 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행안부 국장이 답변 가능합니까, 지난 선거에서 경북·인천·강원 1명씩 추가 증원한 사유에 대해서?

○이상식 위원 모르시면 굳이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당시에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행정안전부자치분권국장 박연병 그 당시에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해서 저희들도 그 상세한 내용은 파악하고 있지 못합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정춘생 위원님, 박덕흠 위원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정춘생 위원 임미애 위원님이 말씀하신 근본적인 취지의 뜻은 다 공감하고요. 제가 알기로는 또 지난번에 시범실시했던 지역에서조차도 2인 선거구로 바꾸는 법안까지 낸 사례도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이것 논의하는 것하고 몇몇 의원들, 저뿐만이 아니고 몇몇 의원들이 발의한 기초의회 3~5인 중대선거구제 전면 도입하는 것하고는 어떻게 또 연관 있게 논의가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소위원장 윤건영 저한테 질문하신 건가요?

중대선거구제 문제는 지난번 회의에서 저희가 토론을 한 번 했고 결론을 내지 않았지만 오늘은 기초의원 총정수에 대해서 우선 토론하자라는 말씀 드립니다.

정춘생 위원님 질의 끝나셨습니까?

○정춘생 위원 이따가 또 추가로 궁금한 것 있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박덕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덕흠 위원 차장님, 지금 시군구의회의 최소 정수를 7인으로 이렇게 정하고 있잖아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그렇습니다.

○박덕흠 위원 7인 돼 있는 데가 보면 거의 농어촌지역이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그렇습니다, 군 단위.

○박덕흠 위원 그런데 여기서 저희가 비례대표를 증원하자 이렇게 얘기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예를 들어서 10인 미만인 지역은 비례대표를 1명씩 더 추가하는 그런 방안은 어떻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그 부분도 말씀하신 것처럼 총정수가 7인·8인·9인이면, 비례대표를 너무 늘리면 지역구가 줄어드는 걱정 때문에 하시는 것 같은데요. 위원님 말씀처럼 10인이 넘는 데만 비례대표 비율을 올리는 것도 방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박덕흠 위원 10인 미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10인 미만에 대해서만……

○박덕흠 위원 비례대표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상향시키자는 말씀이십니까?

○박덕흠 위원 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그 부분은……

○박덕흠 위원 그러면 기초의원 정수가 또 올라가야 되잖아요. 정수가 증원이 돼야 되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총정수가 늘어나야 됩니다.

○박덕흠 위원 늘어나야 되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맞습니다.

○박덕흠 위원 그러면 크게 많이 늘어나지 않아도 비례대표를 늘리자는 안들이 많이 있고 그다음에 또 짝수로 돼 있는 지역 있잖아요. 의원들이 짝수로 돼 있는 데도 해소가 될 것 같고 이럴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정수가 10인 미만인 자치구·시·군 기초의회의 정수를 1명씩 정도는 더 늘려서 비례대표를 확대하자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박덕흠 위원 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그러면 현재 2988명보다는, 정확한 수치는 아님니다마는 그래도 몇백 명 정도 정원이 자연스럽게 늘어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박덕흠 위원 몇백 명까지 되나요? 그것 좀 시뮬레이션 한번 해 주시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예, 데이터는 한번 저희가 찾아서 드리겠습니다.

○박덕흠 위원 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몇백 명까지는 안 되겠습니다, 의회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소위원장 윤건영 박덕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준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준병 위원 저도 지방의회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서 정수 증원하는 경우에 이게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구가 신설되는지 여부에 따라서 연동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기초의회의원이 늘어나면 1명씩 증원하도록 이렇게 틀을 잡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임미애 위원이 지적하고 제안했던 내용, 중대선거구가 후퇴하지 않도록 기존에 했던 정도 이상으로 해야 된다 하는 내용을 부칙에 우리가 입법으로 담는 경우 이게 법적으로 문제될 사항이 혹시 있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지금도 부칙에 있기 때문です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윤준병 위원 그것은 가능하다, 입법적으로는 가능한 내용이다 이런 내용이고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예, 그렇습니다.

○윤준병 위원 그다음에 정수 전체가 지금 비례대표까지 연계돼 있잖아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기초의원은 그렇습니다.

○윤준병 위원 그래서 비례대표와 관련된 대표성을 좀 늘리기 위해서 비례대표 비율을 좀 늘리자 하는 제안들이 꽤 많이 있는데 비율이 늘어나면 그만큼 정수는 늘어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정수 증원하는 내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는 게 좋겠다 저는 이런 생각입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기초의원 총정수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숫자 파악해 보고 정리하겠습니다.
김한규 위원님, 서일준 위원님, 이해식 위원님…… 다 하시네요.

이러면 토론이 잘 안 돼서……

○**김한규 위원** 그러면 저는 생략하겠습니다, 이렇게 많으시면.

○**소위원장 윤건영** 생략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서일준 위원님, 이해식 위원님 여기까지 한번 해 보고 정리하겠습니다.

○**이해식 위원** 저는 이상식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동의하면서 조금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지난 8회 지방선거와 마찬가지로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구가 신설된 지역에는 당연히 기초의원 의석을 하나씩 증원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중대선거구제와 관련해서 지난 회의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어쨌든 우리가 사실 정치개혁을 하자는 그런 취지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최소한 지난번 정도를 유지하는 선에서라도 중대선거구제가 유지돼야 되지 않겠나.

임미애 위원님도 비슷한 취지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중대선거구제 확대 시범실시 지역으로 지정을 해 놓고 지금 4인 선거구 같은 경우에 2인 선거구로 변경해 달라 이렇게 요청하시는 위원님들도 현실적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참 곤혹스러운 일인데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원칙을 세울 때 전체적인 규모 이런 것은 지난번보다 후퇴해서는 곤란하지 않겠나 그런 입장으로 접근해 주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기초의원 정수를 불가피하게 한두 석이라도 늘려 주는 한이 있더라도 중대선거구제의 전체적인 규모는 유지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난번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을 하면서 국회의원 선거구가 달라지면서 자연스럽게 광역의원 선거구도 달라진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기초의원 정수에도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강동구나 송파구 같은 경우가 해당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갑구에 있던 지역, 인구 한 4만 명, 5만 명 되는 동이 을구로 획정이 달라질 때 그럴 때는 기초의원이 하나가 증원되는 게 아니라 사실 변경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 점도 고려를 해야 된다. 그래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물론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은 광역의회에 다루지만 총수를 정할 때는 그런 걸 감안해서 정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서일준 위원님.

○**서일준 위원** 차장님, 10인 미만 의회 숫자가 몇 개인지 자료 좀 주시고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예, 그것은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일준 위원** 저는 기본적으로 지금 우리 전체 인구도 어떻게 보면 정체돼 있고 줄어든 그런 상황이니까 정원을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다만 불가피하게 광역이 늘어남으로 해 가지고 하는 그런 경우, 지금 8회처럼 1석 늘어나는 경우 그다음에 10인 미만에 대해서 너무 숫자가 적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비례대표를 1석 더 추가한다든지 이 정도는 하더라도 늘리는 건 안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해식 위원님 말씀처럼 국회의원 선거구에 따라서 아마 전국적으로 많이 이동이 있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사실상 국회의원 선거구가 기이하게 획정된 게 많이 있어요. 그 바람에 광역도 어떻게 보면 상한선, 하한선이 문제가 돼 가지

고 인접 자치단체를 광역으로 할 경우 인접 자치단체에 있는 기초는 어떻게 할 것이냐, 기초 선거는 어떻게 둘 것이냐 이런 문제도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차장님, 알고 계시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예.

○서일준 위원 그런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중대선거구제인데요. 일선에 있는 선거를 뛰는 후보자들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3인 이상 선거는 낙선하면 비용 보전이 거의 불가능하다. 이게 선거공영제인데 3인 이상이 하니까 주로 후보가 5인, 6인 나온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15% 이상 득표를 하거나 당선이 돼야 되는데 이게 그냥 중대선거구제로 해놓으니까 낙선 이럴 그냥 비용 보전도 전혀 못 받는다,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한번 정도는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 부분도 선관위에서도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이 기초 정수와 관련해서 두 분만 말씀하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조승환 위원님 하시고 정춘생 위원님.

○조승환 위원 중대선거구제 부분에 관해서 정치개혁 그다음에 대표성에 대한 어떤 소수정당의 진출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마는 지방자치의 근본 취지라는 게 기본적으로 아까 골목정치 이야기하셨습니다마는 골목골목에서의 주민들의 의견을 얼마나 잘 받아 와서 전달하느냐 이런 부분들에서 보면 과연 중대선거구제가 맞느냐라는 부분에 원천적인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가 없다. 그래서 중대선거구제를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기존 4인 선거구제, 3인 선거구제를 줄여서 2인 선거구제로 가서 양당 구조로 가자라는 그런 주장은 아닙니다마는 기본적으로 과연 지방자치에 중대선거구제가 맞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 두 번째로 숫자 부분도 우리가 심리적 마지노선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2988명인데 이게 3000명을 넘어가게 되면 이것은 굉장히 여론이나 이런 것의 비난을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부분도 좀 고려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정춘생 위원님 마지막으로 기초의회 총정수 문제는 정리하겠습니다.

○정춘생 위원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조승환 위원님께서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하면 골목골목 의견들을 수렴하고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지 않느냐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동의하기 힘들고요. 왜냐하면 국회의원선거구나 이런 데는 더 넓지만 골목골목 의견을 잘 청취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차장님께 여쭙 보겠습니다.

우리가 정치개혁특위 아닙니까? 우리가 하려는 것은 지금 지방의회가 비례성, 다양성, 대표성 이것이 굉장히 왜곡되고 있기 때문에 바꾸려고 하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많은 지역구 사정에 따라서 이견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10인 미만에 대해서 비례를 더 늘리고 다 좋은데, 그렇게 되면 우리가 비례대표 늘리는 것도 법을 내기는

했습니다만 이게 연동형이랑 또 같이 연계되지 않으면 민주당, 국민의힘 하나씩 더 늘려주는 것 외에는 의미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비례성을 높이자, 대표성을 높이자, 다양성을 높이자 하려고 만든 제도가 숫자만 늘어나서는 안 된다 저는 이런 의미에서 질의를 드리고 싶고.

정수 부분도 우리가 최종적으로 결정을 할 것입니다마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4인 선거구가 2인 선거구로 쪼개져서 또 양당만 이렇게 수렴이 되면…… 지난번 2022년 선거 결과를 보면 50%, 60%의 득표율로 95% 의석을 다 점유하고 있어요. 이것은 저는 주민을 대표하고 있는 제도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 저는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기초의원 총 정수 부분은 이 정도로 하시고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위원장님, 답변 하나만 추가로 드려도 되겠습니까?

○소위원장 윤건영 예, 추가하십시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아까 존경하는 박덕흠 위원님하고 서일준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10인 미만 지방의회 수 확인해 보니까 지금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에 124곳입니다. 생각보다 많습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차장님, 그러면 참고로 3인 이상 선거구, 4인 이상 선거구가 몇 개인지 나와 있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기초의회……

○소위원장 윤건영 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그 자료 금방 확인해서……

○소위원장 윤건영 중간에라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예, 중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4인 이상, 3인 이상 이렇게 몇 개인지 확인해 주세요.

10인 이하가 124곳의 기초단체라는 말씀이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윤건영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1030개 기초의회선거구 중에 2인 선거구가 543개, 절반 정도 되고요, 3인 선거구가 438개, 4인 선거구가 43개, 5인 선거구가 6곳입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알겠습니다.

다음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선거구획정 관련된 내용입니다.

위원님들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 위원님.

○김문수 위원 저는 저희 지역 상황을 좀 있는 그대로 대변을 해 드려야 돼서 그 얘기를 해 드리겠습니다.

인구에 비해서 전남이 광주에 비해서 의원 수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저도 전남 순천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인구로만 따지면 당연히 대도시 위주로 수가 많은 게 맞지만, 실제 의정활동을 저도 서울시의원도 해 보고 전남 가서 농촌의 국회의원을, 양쪽 다 해 봤기 때문에 어쨌든 그래도 대도시는 예산 따기도 쉽고 또 같은 예산이

나 정책으로도 만족도나 효율성이 워낙 높기 때문에 사실은 일이 더 힘든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농촌으로 가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주민 한 분 만나는데 그냥 몇 시간 가서 만나고, 온갖 들판이 다 의정활동의 대상들입니다, 사람은 아닌데. 그래서 단순히 이것을 사람 수로만 의정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전라남도가 이렇게 의원 수가 많은 것이 꼭 비정상적인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특히 통합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하면 당연히 이것 통합하면 대도시로 모든 게 쏠려 갈 텐데 절대 우리 통합하면 안 된다 이런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지방의원들은 굉장히 반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통합 동의안을 광역의회에서 통과를 시켜야 되는데 그래도 통합을 해서 크게 보고 가자 이렇게 설득을 하는 과정에서 어쨌든 지역 대표성이 없어지지 않도록 하여간 의석을, 선거구를 하나도 안 없애고 일단 이번에는 그대로 보전을 해서 그것이 4년간 통합 의회에서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할 테니 꼭 좀 통과를 시켜 달라고 암묵적인, 정치적인 합의를 하고 통과를 시켜 봤기 때문에 지금 전남도의원들이나 거기 기초의원들은 자기 지역구가 인구 때문에 소멸되지 않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고 이미 공천이 막 되고 있습니다, 우리 당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많이 감안해 주셨으면 해서 하여간 전남은 그대로 유지를 하고.

다만 광주 입장에서 보면 인구 대비 너무 적으니까 어쨌든 어떤 방식으로든 좀 늘려줬으면 한다 이걸데 광주도 거의 공천 작업이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것을 선거구를 너무 많은 변경을 하거나 이렇게 해 가지고는 뽑는 과정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최대한 선거구를 변경하지 않으면서 늘리는 방법, 그게 1명만 뽑던 것을 2명으로 뽑아 준다는가 아니면 중대선거구로 묶어서 1·2등까지만 뽑던 것을 1·2·3등까지 뽑아 준다는가 해서 좀 쉬운 방법으로 광주를 늘려 주고 전남은 유지해 주고 이렇게 되면 소수정당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많이 같이 해결될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특히 국민의힘 위원님들께서 많이 좀……

○소위원장 윤건영 마무리 좀 부탁드립니다.

○김문수 위원 양해를 해 주시고 많이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정춘생 위원님이 먼저 말씀하셨으니까 정춘생 위원님, 김승수 위원님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그다음 이해식 위원님.

○정춘생 위원 김문수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그 문제의식 일정 정도 동의는 합니다만 조금 동의가 안 되는 부분도 있어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최초로 출범을 합니다. 그래서 다들 하시겠지만 많은 재정 지원과 권한들이 시장한테 물리게 되는데요. 그만큼 저는 민주적으로 지방의회의 권능도 강화하는 제도를 지금 하지 않으면…… 이후에 대구·경북도 통합될 수 있고 대전·충남도 통합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어떻게 할 것인가가 저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름 합리적인 대안을 만들어서 낸 것이 임미애·정춘생·정혜경 의원이 공동발의한 법안인데요. 지역구 국회의원선거구와 광역의회선거구를 동일시해서 3인 이상으로 선출하면 어느 정도 인구편차 문제도 해결될 수 있고 소수정당의 진출 문제도 해

결될 수 있고 그런 과정에서 민주적인 지방의회를 구성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선관위 차원에서 어떻게 고민을 하거나 대책을 마련하거나 하는 부분이 있으면 차장님의 의견도 듣고 싶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지난번 소위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같은 경우는 그 방안이 김문수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세 가지 방안이 있다고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광주의 평균 인구 수를 전남과 어느 정도 일치시키면서 하는 방안은 전남 의석수는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광주를 늘리는 방안이 가장 합리적이지 않느냐 이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고요. 정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예 광주도 전남도 전부 중대선거구제로 전환하게 되면 지금 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너무 과도한 변화가 있어서 지금 현재 선거를 준비하시는 예비후보자나 입후보예정자 입장에서 상당히 곤란하지 않을까 그렇게 우려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정춘생 위원 총리실 사회대개혁위원회에서 그렇게 가야 된다고 제안을 하지 않았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할 때는 검토가 가능한데요. 이번 9회 지방선거 때 막바로 도입하는 부분이 조금 쉽지 않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춘생 위원 동의하기가 어렵네요.

○소위원장 윤건영 질의 끝나셨습니까?

차장님, 한 가지만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선거가 목전이라서 논의하기가 힘들다는 식은 답변은 하지 마십시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그러면 정개특위 뭐 하려 있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유의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그냥 현행, 원래대로 하면 되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김승수 위원님, 이해식 위원님, 박덕흠 위원님 순서로 질의하겠습니다.

○김승수 위원 대구 북구율의 김승수입니다.

저번 정개특위 때도 논의가 됐었습니다마는 지금 가장 큰 문제는 광역시와 전남도, 그러니까 도 지역의 광역의원의 편차가 굉장히 심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광주시 같은 경우에도 지역구의원 정수가 광주 인구가 140만 조금 못 됩니다. 그런데 20명인데, 전남 같은 경우에는 170만, 인구 차이는 크게 나지 않는데 지역구의원 정수는 55명으로 거의 세 배 가까이 차이 난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이나 사전준비도 없이 이렇게 통합을 진행했다는 것도, 선거를 얼마 남기지 않고 했다는 것 자체가 이번 시도 통합이 얼마나 정략적으로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는가를 그대로 여실히 보여 주는 겁니다.

사무차장님 말씀하신 그것 자체도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이 지금 광주와 전남도 간의

인구편차도 심하지만 추후에도 통합 가능성이 있는 대구·경북만 예를 들더라도 대구의 인구 하한이 지금 3만 9000입니다. 거의 4만에 가까운데 광주의 하한은 그것보다 훨씬 적은 3만 4000이라는 말이지요. 도는 더합니다. 경북의 하한 같은 경우는 2만 3000인데 전남은 1만 6000밖에 안 돼요. 지금도 인구 비례했을 때 대구·경북에 비해서 광주·전남이 광역의원 수가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또 추가적으로 통합하니까 불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광주를 늘린다, 이것은 불균형을 더 심화시키는 거예요.

이런 부분까지 고려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광주·전남 간의 그런 불균형도 어느 정도 완화를 시켜야 됩니까라는 다른 대구·경북, 부산·경남, 또 충청권 이런 쪽하고도 어느 정도의—수도권하고는 워낙 인구 차이가 많기 때문에 별개라 하더라도—균형을 맞춰야 되는 데 오히려 인구도 적은데도 불구하고 더 높인다는 자체는 말이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잘 고려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앞서 내가 문제위 회의 때문에 늦게 와서 지역구 정수에 대해서 말씀을 못 드렸었는데, 소수정당에서는 자꾸 중대선거구로 가야지 당선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지난 지방선거 때 무려 9선을 한 의원이 있습니다. 무소속입니다. 오히려 이게 그러니까 지방자치의 풀뿌리 민주주의라는 본질에 충실하면서도…… 본질에 충실하다는 게 뭐니까? 지역 주민들하고 굉장히 긴밀하게 접촉을 하면 당적이 없어도 이렇게 9선까지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것을 하려는 노력을 하는 것이 더 지방자치의 취지에 맞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이해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요. 다음 박덕흠 위원님 하고 서일준 위원님까지 하고 이 안건에 대해서는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해식 위원 선거가 임박했기 때문에 선거구 획정을 아주 파격적으로 하기는 힘들겠지요. 단일한 인구 기준을 만들어서 하기는 불가능한 거기 때문에 저는 어쨌든 현행 유지가 돼야 될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만 다음에는, 다음 지방선거까지는 단일한 인구 기준에 의해서 인구편차를 줄이면서 선거구 획정을 한다라고 하는 어떤 조건이 당연히 붙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지금 광주 같은 경우에는 현행 의석수의 곱하기 2, 두 배를 해 달라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전남은 줄여서는 안 된다, 현행을 유지해 달라 그런 요구잖아요. 그런 요구 이면에는 사실 또 원구성을 걱정하는 게 있지요.

그러니까 광주는 과소 대표가 되기 때문에 의장이나 혹은 상임위원장 배분에 있어서도 전혀 되지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에 특례를 줘 가지고 전반기·하반기 같이 갈라서 한다든지 또 상임위원회 구성도 적절한 비율로, 제가 볼 때는 한 6 대 4 정도가 적절해 보이는데 그런 방식으로 해서 전반기·하반기를 서로 나누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주는 것, 이렇게 규정을 하면 그나마 불만들을 좀 해소해 가면서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서일준 위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관련해서는 조금 전의 김승수 위원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문제하고 뒤에 헌법불합치 문제하고 사실상 일맥상통한다고 생각합니다.

원칙대로 한다면 통합특별시는 똑같이 인구편차가 3 대 1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외를 두자라는 이야기가 지금 중대선거구제를 둔다든지 아니면 종전 그대로 하자, 이게 예외를 두자는 겁니다. 종전 그대로 하자가 특히 예외를 두자라는 그런 뜻 같은데 하여튼 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문제하고 뒤에 있는 헌법불합치 문제, 헌법불합치 문제도 사실상 국가균형발전 문제 때문에 이것은 꼭 우리가 다루어 줘야 될 문제다. 그래서 2개를 별도로 논의할 게 아니라 같이 논의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이 안건에 대해서 추가 토론이 없으시면 다음 안건으로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헌법불합치 우려지역 처리 방향입니다. 아까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말씀 주셨고요. 위원님들 의견 부탁드립니다.

이상식 위원님.

○이상식 위원 선거구 획정에서 인구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기는 하지만 저는 광역의회 같은 경우에는 기초자치단체에서 대표를 못 내는 것 자체가, 한 명도 안 보내는 것 자체가 굉장히 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울릉군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8700명이지만…… 그래서 경북도의회에 자기 군의 대표가 한 명도 없다는 게 이게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여기 해소 방향에서 ㉠ 기초자치단체의 일부 또는 전부와 같이 합쳐서 한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지방의회의 구성상 이것은 문제가 많다고 보고, 그래서 ㉡으로 가는데 조정 범위 내에서 정수를 확대하거나 이렇게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여튼 기본적으로 헌법불합치 우려지역을 해소하는 방법에서 정수를 확대해서 이것을 현행으로 유지해야 된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또 다른 위원님.

○조승환 위원 저는 이상식 위원님 의견에 기본적으로 확대한다는 부분보다는 군 단위, 그러니까 기초지자체 단위에 광역지자체의 대표가 없더라는 부분은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부분이고 이것은 정 고쳐야 된다고 그런다면 자치단체를 건드려야 되는 부분이지 이것을 기존의 자치단체를 가지고 있으면서 광역의원을 못 내도록 하는 이런 부분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또 법까지 바꾸어 가면서 국회의원 선거구를 같이 하는 구 지역 안에서의 동을 떼서 준다는 부분도 사실 이것은 말이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여기 여러 가지, 인구 조정이나 생활인구다 그다음에 인구 하한을 조정한다, 여러 가지 방법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이 방법들이 지속 가능하냐라고 봤을 때 지속 가능하지도 않고 지금 현재 이 9개를 다 커버할 수 있는 조정 방안도 나올 수가 없다는 측면에서 보면 이것은 지금 지역 대표성 인정 방안, 지리적 특수성이나 과소 지역에 대한 지역 대표성을 인정하는 방안으로 입법정책적으로 나가는 게 맞지 않겠느냐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잠시만요. 지금 두 분이 먼저 이야기하셔서……

김승수 위원, 윤준병 위원 먼저 하시고 그다음에 다시 한번 파악하겠습니다.

○김승수 위원 지방자치의 취지를 볼 때 사실은 지방의원 정수라든지 지방공무원 정수

같은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재원으로 다 충당할 경우에만 크게 중앙에서 관여할 필요가 없다 하겠습니까마는 어쨌거나 지금 대부분의 지자체의 인건비, 지방의원의 인건비조차도 중앙정부의 재원으로 충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특정 지자체가 이렇게 과도하게 다른 지자체와 비교해서 의원 수가 많다든지 또 무작정 지방의원 정수를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기본적으로 반대를 합니다마는 앞서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신 것처럼 풀뿌리민주주의의 그런 지방자치의 본질로 미루어 볼 때 지방의원의 관할 범위가 너무 늘어나면 지방자치의 의미가 거의 없어진다는 거지요.

특히 지금 하한 같은 경우에, 경북 같은 경우에도 울릉이 있고 대구는 군위가 있습니다만 울릉 같은 경우에 인근 지자체와 이것을 합치게 돼 버리면 정말 국회의원도 하기 힘든 울릉도와 포항을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고요. 군위군도 지금 현재 군위군 면적이 서울시 면적보다 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인구로만 단순히 이야기할 것이 아니고 그런 관할 범위, 면적도 충분히 고려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앞서 다른 위원님 말씀처럼 적어도 한 기초자치단체에 1명의 광역의원은 꼭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의 결정도 존중하지만 특별한 예외 규정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윤준병 위원님을 마지막으로 혹시……

일단 듣고 정리하겠습니다.

○윤준병 위원 선거구 확정, 특히 헌법불합치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한 해소 방안, 우리 위원님들 지금 다 최소한 해소를 할 필요가 있다 하는 취지의 의견들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저는 현재에서는 선거구 확정과 관련해서 인구 대표성을 사실상 강조하고 있고 그것은 현재의 결정을 통해서 입법을 의무화하고 있는 이런 제도적 장치가 있는데 인구 대표성과 같은 가치가 있는 지역 대표성과 관련해서는 현재에서 사실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등한시한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입법적으로 잘 보완 장치를 하고 갈 수밖에 없는 영역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고요.

그런 측면에서 지역 대표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내용에 따라서는 지금 법에서 조정범위 20%로 되어 있는 부분을 좀 늘릴 필요가 있는 영역이 있는지도 봐서 이것은 전향적으로 좀 검토가 필요하고.

또 현재 헌법불합치로 결정된 지역 플러스해서 우려가 되는 지역 9개소를 해소하려면 최소한도 조정범위라고 정해져 있는 현행 입법 내용 범위 내에서라도 조정해서 이것을 최소화할 수 있는 내용을 최대한 찾아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울릉이나 옹진과 같은 특수한 상황이 있는 지역에 대해서도 입법적으로 이 부분은 지역 대표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조정이 돼야 될 필요가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경우에 기초자치단체 일부를 좀 조정해서라도 헌법 결정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이런 내용들로 이 지역에 대한 처리는 이루어져야 될 필요가 있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알겠습니다.

지금 거수하신 분들이 계신데요. 제가 좀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위원님들이 다 해당 지

역의 출신이시고 하니까 의견이 통일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토론을 위해서 사무차장님께 좀 다른 시각에서 질의를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끊었습니다. 왜냐하면 들어 본들 다 같은 이야기일 것 같아요.

지금 위원님들이 조정범위 내에서 조정을 확대를 하거나 해 보자라고 하는 그 방안 자체가 위헌 아닌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조정범위라는 게 지금 법에 있는 20%를 말씀하시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지금 20%로 하게 되면……

○소위원장 윤건영 아니, 그런데 하한 인구에는 완전히 미달되는 상황인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아닙니다. 그 조정범위를 지금 현재 부산하고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20%를 다 채우지 않은 상태입니다. 20%에 미달돼 있기 때문에, 부산 같은 경우는 13%, 전북 같은 경우는 12%로만 조정지수가 올라가면 두 군데는 해소가 됩니다, 무주하고 부산 중구는.

○소위원장 윤건영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조정범위로 해소 가능한 지역이 몇 개나라는 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20% 내에서 하는 게 부산 중구하고 전북 무주, 두 군데는 해소가 가능합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나머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나머지가 지금……

○소위원장 윤건영 조정범위 내에서도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20%로는 안 되고요. 경기 연천이 31%, 전북 장수가 27%, 경남 의령이 32%…… 여기까지는 어느 정도 조정지수를 조금 올리면 될 것 같은데 나머지……

○소위원장 윤건영 알겠습니다, 차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도, 위원님들 계속 같은 말씀을 하시길래 제가 중간에 끊었는데 조정범위 내에서 하자라는 말씀으로는 살릴 수 있는 게 2개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부산하고 아까 말씀하신 무주, 2개. 나머지는 법을 바꾸지 않으면 이게……

그것 하나하고 그다음에 인접 자치를 병합하는 방식 이것은 다른 법적인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현재까지는 한 번도 시도는 안 해 봤는데 현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해소하는 방법은 아까 조정지수를 조정하는 방법하고 인접한 자치단체에서 끌어오는 방법, 이 두 가지가 가능하지 않을까……

○소위원장 윤건영 알겠습니다.

그러면 끝으로 저희가 인구감소 지역이 해년마다 늘어나는 상황이어서 이런 헌법불합치가 다음 선거 또는 총선에서 어느 정도로 예상되는 그런 시뮬레이션 결과가 있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그 부분은 지역마다 인구감소 비율이 다 다르기 때문에 별도로 저희들이 시뮬레이션을 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알겠습니다.

서일준 위원님 하시고 정리하겠습니다.

○서일준 위원 지금 위원장님 말씀과 비슷한 내용인데요.

일단 20% 범위 내에서 최대한 림이 있는 경우에 최대한 조정을 하고 그것 가지고 부족한 부분은 인접 자치구하고 하는 그런 방안도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상식 위원 잠깐만 하겠습니다.

○배준영 위원 아니, 발언은 좀 들으시고…… 정리하셨으면 발언을 좀 하게 해 주십시오.

○소위원장 윤건영 아니, 잠시만요. 같은 이야기는 반복하지 마시고, 오늘 안건들이 많아서 그러니까요.

○이상식 위원 좀 더 큰 이야기로 이것 있지 않습니까? 주민 참정권하고 헌법불일치라는 큰 가치 2개가 상충되는 건데 지금 헌법불일치라는 이런 상태가 다른 영역에서는 이게 계속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당장에 이 법률을 개정해 가지고 다른 기초 단체하고 하고 한다는 게 이게 제가 보기에는 시간적으로 가능할 것 같지 않습니다. 헌법불일치가 다른 여러 가지 사회 영역에서 계속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우리가 이번에 꼭 이것을 해야 된다…… 이 해소를 시켜야 됩니까? 저는 그것을 생각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국민의 참정권이나 여러 가지 문제의 가치가 더 크면, 우리가 명분이 있으면 그대로 이렇게 유지해도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혹시 차장님 답변하실 것 있으세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그 부분은 헌법재판소에서 판결문에 2월 19일까지 전라북도의 선거구 전체를 확정 안 되면 전부 무효로 했기 때문에 만약에 확정 안 된다면 전라북도 전 지역 선거구는 다 무효인 선거구가 돼서 뽑을 수가 없는……

○정춘생 위원 해석이 그렇게 되나요?

○소위원장 윤건영 법적으로 그것은…… 정리하시고요.

다음, 배준영 위원님 말씀……

○배준영 위원 지군법상 지금 인구감소 지역이 89곳입니다. 계속 줄어들 텐데 저는 중장기적으로는 해당 시군구에 반드시 광역의원이 있도록 하게 우리가 방향을 가야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조정범위 내에서 정수를 확대해야 하는데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시다가 말았는데 웅진군 같은 경우는 몇 퍼센트입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130%입니다.

○배준영 위원 130%입니다. 그래서 이것 조정 갖고 해결할 수가 없고 말하자면 특수한 조항을 넣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예를 들어서 웅진군 같은 경우는 7개 면이 있는데 200km 이상 떨어져 있고 시의원이 다 다니면서 챙겨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단순히 조정범위 정수를 확대해 갖고 전체적으로 할 수는 없는 부분이라서 그런 점까지 감안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혜 위원 차장님이 말씀하신 것 하나만 제가……

○소위원장 윤건영 예.

○김은혜 위원 강동완 차장님, 조금 전에 전북의 경우에는 무주를 포함해서 무효 선거

구가 된다고 하셨잖아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예, 그렇습니다.

○김은혜 위원 그러면 다른 지역도 곧 무효 선거구가 되는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그것은 헌법소원 제기를 안 했기 때문에 다른 지역은 당장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김은혜 위원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무주를 예로 드시면서 말씀하신 것은 무주에 한한 거지 다른 지역에 해당……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전라북도 전체라고 현재의 결정……

○김은혜 위원 그러니까 전북만 해당이 되는 거지 다른 지역에는 해당되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 시점과 미래 시점을 좀 구분해서 저희가 들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돼서 질문드렸습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이것은 마무리하겠습니다.

혹시 지금까지 나온 결과 좀 다른 이야기의 질의나 이런 내용이 있으시면 하시고요.

○이상식 위원 전북은 높이면 다 된다면서요? 20% 풀로 가동하면 두 군데가 다 해소된 다면서요?

○소위원장 윤건영 아니라고 아까 말씀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장수는 27%입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잠깐만요, 여기 사적으로 대화하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정리해 주시고.

다음 안전 토론으로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제주도의회 관련해서 위원님들 말씀 주시고 토론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한규 위원님.

○김한규 위원 제주도 얘기 전에 아까 얘기만 잠깐 먼저 하고 가면요, 저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헌법을 지켜야 된다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해당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기는 해야겠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위헌인 것을 명확하게 아는 특례 규정을 넣는 방식은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세부적으로 나중에 더 논의를 하겠지만 현재가 명확하게 위헌이다라고 판단한 헌법불합치 지역에 특례를 두는 것은 저희가 엄청난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고려해 주시고요.

저도 지역에 섬이 여러 군데 있는데 섬이 있어도 다 의정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특정 섬만 별도로 지역구에 무조건 광역의원을 뒀야 된다는 부분에는 동의하기가 좀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이런 얘기 하고 제주도 말씀드리면 제주도 요청사항 안 들어주실 것 같기는 한데 말씀드리면 제주도는 좀 독특한데, 기초지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초의원이 없어서 광역의원이 기초의원 역할까지 하는 데고요.

지난번에 기초지자체를 부활하자는 논의가 있었는데 그게 도입이 되지 않아서 만약에 도입이 됐으면 상당히 많은 선출직들이 생기는 상황이었고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전제로 말씀을 좀 드리고.

그렇다고 하면 현재 도의원이 45명인데 다른 지역보다 광역이 인구 비례당 많지만 그

것은 기초의원이 없기 때문에 고려해서 초반에 정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교육의원이 5명인데 이 교육의원이 지금 제주도만 있는 상황이고 일몰이 되는 특수성이 있으니 이 5명의 교육의원을 일반 도의원으로 전용할 수 있게 해 주십사라는 게 부탁의 말씀이고.

가능하면 지역구를 늘리는 것보다는, 지금 지역에는 교육의원이 있다 보니까 교육전문가가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출마하는 분들도 없고요. 그러다 보니 비례에서라도 교육전문가들을 의원으로 저희가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고, 45인 이하로 이렇게 ‘이하’라는 표현을 한 것은 제주도는 광역의회에서 구체적인 인원과 지역구를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른 지역하고 달리. 그래서 45인 이하로 할 수 있게 해 주시고, 저는 비례 정원을 지금 20%에서 25%로 조금 늘리면 실제로 5명 전체가 아니라 한 3명 정도 늘리는 정도로 광역의회에서 조정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 드리고요.

참고로 지난 선거에서는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딱 네 분씩 비례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 민주당이 의석수를 더 가지려고 하는 취지는 아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지역구를 늘리지 않는 것도 마찬가지로 지역구는 저희 민주당이 조금 더 유리하기 때문에 저희 당리만 생각하면 지역구를 늘리는 게 맞지만 그게 아니라 비례를 늘려서 되도록이면 다양한 도민들의 의사가 반영됐으면 좋겠다, 이게 제주도만이 아니고 저는 개인적으로 광역은 전국적으로 비례를 늘렸으면 좋겠는데 저희 당에서는 비례를 늘리면 극우 정당이 들어오면 어떠냐라고 우려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극우든 극좌든 실제로 의석 비율에 맞는 사람이 들어오면 그 의회 내에서 합리적인 의견이 살아남는 거고 극단적인 의견이 지지를 못 받는 거라, 진보 진영에서는 극우를 걱정하고 보수 진영에서는 극좌를 걱정할 수 있는데 그 정도는 저희가 방어해 낼 수 있는 힘은 있지 않나라고 생각 드리고.

제주도 부분은 큰 숫자가 아니니까, 위원님들 다른 복잡한 논의하시느라 바쁘시니까 제주도는 빨리 이렇게 동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김승수 위원님 하시고 정춘생 위원님, 서일준 위원님.

○김승수 위원 광역의회 교육위원회 제도가 다른 시도도 있다가 없어지고 일반 의원 중에서 교육위원회로 가는 그런 체제가 됐습니다만 지금 정개특위에 와서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자치는 지방의 특수성 등을 고려해서 다양화돼야 된다, 차별화돼야 된다는 게 저의 지방자치에 대한 기본 소신입니다.

그래서 특히 교육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벌써 좀 오래됐습니다만 제가 미국에 연수할 때 거기 주도 주로 교육자 출신들이 교육의원으로 나와서 활동하는 그런 모습들을 봤었는데 대구 같은 경우도 기존에 교육의원을 별도로 뽑을 때와 지금 따로 뽑을 때, 매 2년마다 상임위가 바뀌고 하다 보니까 교육 전문성이 좀 떨어지는 그런 부분을 여실히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비례대표제로 해서 지역 특수성을 반영해서 하되 실질적으로 교육의원이 되는 비례대표들은 또 일정 부분의 요건을 뒤 가지고 말 그대로 교육 전문가들이 와서 지역 교육 정책을 제대로 심의할 수 있도록 그런 체제로 운영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정춘생 위원님 하시고 서일준 위원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춘생 위원 저는 제주도 출신이기는 합니다만 제주도 지역구 국회의원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접하면서 제가 먼저 이 법안을 발의했는데요. 김한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제주도는 기초단체장도 없고 기초의회도 없습니다. 그만큼 제주도민의 이해를 대변하는 의원 숫자가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게 많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물론 광역의회 숫자만 보면 다른 타 시도에 비해서 많다고는 할 수 있지만 그렇게 단순히 비교할 거리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일몰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약간 조금은 다르지만 교육의원 5명이 일몰되는데 그 5명을 온전히 비례로 전환하는 부분을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주특별자치도도 출범을 하면서 여러 가지 특례 조항이 있고 또 다른 시도에 비해 다르게 운영되는 만큼 광역의회 구성을 하는 거나 운영하는 방식도 다르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주셔서 논의를 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서일준 위원님.

○서일준 위원 차장님, 제주도의회 선거구가 소선거구제입니까, 중대선거구제입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소선거구제입니다.

○서일준 위원 소선거구제입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예, 32개 소선거구제입니다.

○서일준 위원 지금 의석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민주당이 조금 많이……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만 7 대 3, 6 대 4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서일준 위원 그 앞에는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직전에도 그 정도였고요. 그전에는 아마 비슷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김한규 위원 제주도는 약간 스윙지역입니다.

○서일준 위원 그래서 저는 지금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또 광역도 특례시 이상은 중대선거구제 시범실시 해 보자, 제주도도 이런 부분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차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바로 이번 지방선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장기적인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서일준 위원 지방선거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도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지금 제주도도 마찬가지로 32개 지역구에 전부 예비후보자들이 등록돼서 다 활동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갑자기……

○서일준 위원 제주도가 좀 특이하잖아요. 그렇지요? 기초하고 광역을 겸하니까 중대선거구제를 할 필요성도 있다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장기적으로는 그 부분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일준 위원 그렇지요? 하여튼 교육의원 문제는 저희도 내부 의견 수렴을 좀 더 해서 입장을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혹시 제주도의회 관련해서 이야기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두 분…… 박덕흠 위원님 먼저 하시고, 윤준병 위원님 하세요.

○박덕흠 위원 차장님, 지금 도의회 구성 비율이 아까 몇 대 몇이라고 그러셨나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지금 확인해 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박덕흠 위원 제가 보기에선 더불어민주당 27명, 국민의힘 12명, 무소속 1명, 교육의원 5명 맞나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정확한 수치는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한규 위원 제가 답변드리면, 맞습니다.

○박덕흠 위원 맞아요? 아까 얼마 차이가 안 나는 것같이 말씀하셔서……

○김한규 위원 비례는 4 대 4입니다.

○박덕흠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교육의원 5명 이 부분은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고, 어쨌든 우리가 비례대표의 필요성도 있고 또 교육의원에 대한 그런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가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현재 사직 안 하신 42명이 있는데 더불어민주당 27석, 국민의힘 11석, 진보당 1석, 무소속 없고, 교육의원 3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2석이.

○소위원장 윤건영 이것은 아까 김한규 위원님 말씀처럼 소선거구제다 보니까 이게 스윙보트(swing vote) 지역으로 이렇게 왔다 저렇게 갔다라고 하고 비례는 절반, 절반이라는 것 같고요.

윤준병 위원님.

○윤준병 위원 저는 교육의원 포함해서 45명 이내의 정원이 있는데 제도가 바뀌면서 교육의원 5명이 소멸되면서 줄어드는 것, 이것은 전체적으로 보전할 필요는 있겠다 이런 생각이구요.

대신에 이것을 보전하는 방식이 비례대표, 전체적으로 정책을 변경해서 프로테이지를 높여 가지고 보충할 수 있는 영역이 있을 거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제안한 대로 지금 소선거구제인데 인구가 많은 지역에 중대선거구 일부 포함해 가지고 조정해서 이렇게 보완하는 방법도 있겠다 그런 내용이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대체적으로 제주도의회 교육의원 및 교육위원회 제도와 관련해서 위원님들 말씀 주셨는데 크게 반대의견들은 안 나온 것 같습니다.

혹시 반대의견이나 다른 의견들이 없으면 대충 이 정도로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크게 주요 쟁점에 대해서는 네 가지에 대해서 의논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차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초의원 총 정수 문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문제 그다음에 헌법불합치 지역,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 문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위원님들 중에 이 네 가지 주제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꼭 말씀하실 분 계시면……

박덕흠 위원님.

○박덕흠 위원 선거 기준일, 인구 기준일 있잖아요, 10월하고 1월. 그런데 이것을 사실 어떻게 보면 저희 지역이 혜택을 볼 수 있다라고도 할 수 있고 또 어떻게 보면 10월을

기준으로 해서 또 1월을 기준해서 손해 보는 지역도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도 어느 한 곳이라도 플러스가 되는 쪽으로 위원님들이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다, 이게 당을 떠나서 제 지역구지만 지금 거기가 당 지지율이 거의 20% 가까이 차이 납니다. 옥천이라는 지역이 제가 있을 때 민주당 군수였던 사람을 영입을 해서 한 번 나가서 한 번 났고 나머지는 지금까지 거의 국민의힘에서 당선된 적이 없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군수도 도의원을 세 번이나 역임하고 군수 도전해서 당선이 된, 먼 첫번째 바람 불 때도 옥천군수가 민주당에서 당선된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당이 유리하다, 불리하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서, 그래도 한 곳이 또 합리적으로 1월 기준으로 해서 살아날 수 있으면 농어촌 지역, 인구감소 지역 이런 부분을 배려를 해 주는 것이 맞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오늘 안건 이외에 선거구획정 그리고 주요 쟁점 전반에 대해서 말씀 주실 위원님도 말씀 주십시오.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일 것 같아서요.

추가로 의견 주실 위원님들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사무차장님이나 행안부에서 오늘 논의했던 사안에 대해서 말씀 주실 것이 있으실까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만약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선거구획정을 할 때 혹시나 중대선거구제로 하더라도 3 대 1은 반드시 지키는 것으로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행안부 국장님도 말씀 주실 것 있으면……

○행정안전부자치분권국장 박연병 저는 지금 박덕흠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인구 기준 시점을 작년 10월로 할 건지 금년 1월로 할 건지를 위원회에서 신속하게 결정해 주시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시뮬레이션이라든지 인구자료 충실하게 준비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오늘 저희가 원래 법안까지 가려고 했는데 오전 시간이 다 가서요 마무리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제가 미리 사전에 서일준 간사님하고 의논은 못 했습니다만 다 같이 있는 자리에서 두 가지 정도를 좀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1소위에서 법안을 다루는 게 물리적으로 너무 제한이 되니 여야 공히 소소위를 구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의논을 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법안만 관련해서. 주요 쟁점은 전체가 논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법안 속도가 전혀 안 나고 있어서……

두 번째로는 앞서 서일준 간사님이 시급한 법안만 다루자고 하면 상정돼 있는 법안을 다시 행안위로 돌려야 됩니다. 그래야 행안위에서라도 이야기를 할 수 있거든요. 즉 정개특위가 이 법안을 가져오면 행안위에서 논의가 안 되니까 만약에 소소위가 안 된다, 힘들다고 하면 지금 상정돼 있는 법안을 다시 정개특위가 행안위로 보내는 것에 대해서도 검토해 주셔야 속도를 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춘생 위원님은 아까 모두에 결선투표제 이야기를 하자고 하셨는데 여야 간에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안건 상정과 관련해서. 그래서 저는 소소위라도 해 봐서

논의라도 하자는 건데 그게 온당치 않다고 하면 행안위라도 보내 주셔야 이게 논의가 됩니다, 행안위에서라도. 그 부분을 의논해서 답을 주시면 저희가 여야 간에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여당 내에서도, 민주당 내에서도 그리고 조국혁신당과도 이 부분은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한규 위원** 저 관련해서……

○**소위원장 윤건영** 예.

○**김한규 위원** 저는 가능하면 이번 정개특위에서 간단히라도 논의를 했으면 좋겠는데, 행안위로 돌리게 되면 사실 민주당이 위원장이기 때문에 단독 처리도 가능합니다, 아시겠지만. 최근 행안위에서 국민의힘이 찬성하지 못한 법안들을 저희가 부득이하게 통과시킨 경우도 있는데 정개특위를 만든 이유는 그래도 선거의 물이니까 되도록이면 여야 합의로 처리하자는 원칙하에서 가져온 거라 실질적으로 합의가 안 되더라도 정개특위 전체 회의에서 상정을 한 것은 그래도 소위에서 한 번은 다 검토를 하는 게 낫지 않나. 지금 전체회의로 돌려서 그것만 저희가 단독 처리하면 모양새가 너무 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것은 저희가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개특위의 특성상 그래도 여야 합의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낫지 않나, 그래서 소위를 만들든 아니든 저희가 회의를 더 하든 그래도 한 번은 다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김은혜 위원님 하시겠어요?

○**김은혜 위원** 저는 제 의견, 이 안건 포함해서……

○**소위원장 윤건영** 예.

○**김은혜 위원** 법안 처리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다만 단기적으로 이번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적용돼야 되는 시급성과 당위성이 있는 것과 장기적으로 검토돼야 되는 법안을 조금 나누어서 접근하는 게 어떨까라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재외선거의 경우에는 대통령선거라든지 임기 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에 적용되는 법률이기 때문에, 2028년 치러지는 다음 국회의원선거까지 충분한 시간이 있기 때문에 지방선거를 다루는 저희 정개특위에서 하기에는 행안위와 함께 병행해서 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시급성과 당위성을 감안해서 법률이 압축적으로 논의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제가 어제 선관위 그리고 법무부 보고를 받아서 여기에 계신 소위 위원님들과 함께 공유하고자 하는 사안이 있습니다. 법안 관련인데요. 지난번에 함께 공유하고 공감대를 주셨던, 외국인에 영주권 취득 후 3년이 경과하면 자동적으로 지방선거투표권을 부여하는 부분에 대해서 실제 거주하고 있는지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서류상만 영주권자의 선거권 행사가 맞느냐는 논의가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물론 개인적으로 외국인투표권은 상호주의에 기반해야 된다는 소신을 갖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단기간에, 이번 지자체선거에서라도 선거 공정 또 정치개혁에 부합하는 방안을 고민하다가 임기 4년 중에 2년 정도는 국내에 실거주 해야 선거권을 부여하는 것이 맞다는 법안을 발의했는데요.

선관위 보고를 받아 보니까 법무부의 외국인정보 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서 선거인명부 작성 단계에서 체류 기간을 확인해서 충분히 선거인명부를 만들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물론 시스템 구축이나 검증 기간이 소요되고 자금도 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 공정성이나 지역 민의의 정확한 반영을 위해서는 더 지체될 수 없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든 언제든 소위원회에서 반드시 외국인 선거권과 관련한 법안이 상정돼서 논의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 간사님들께 요청드리고요. 전체회의 때 송기현 위원장님도 확인 필요성을 말씀하신 만큼, 여야 위원님들이 이 같은 선거 공정에 대해서 이견이 없으실 것인 만큼 그렇게 생각되어서 요청을 한꺼번에 드렸습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서일준 간사님 말고는 또 발언하실 분 없으시지요?

서일준 간사님.

○서일준 위원 선거제도는 기본적으로 여야가 합의해 가지고 하는 게 민주주의의 기본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정개특위가 너무 늦게 발족되는 바람에 사실상 시급한 것은 지금 현장에서 뛰고 있는 후보자들을 위한 선거구획정입니다. 그래서 선거구획정 하는 데에 따른 부속 법안이라든지 이 부분을 밀도 있게 정개특위를 운영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고, 앞으로 나머지 선거제도라든지 이런 부분은 이 선거구획정을 완료한 후에 정말 정개특위에서 심도 있게 다시 다뤄야 될 부분, 아니면 행안위에 넘겨서 해야 될 부분 이렇게 좀 구분을 해서 하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오늘 깊이 있는 토론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제안드린 것처럼 법안소위만을 위한 소소위 구성에 대해서 국민의힘 위원님들하고 조국혁신당에서는 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앞서 제가 예를 들었던 제도개혁과 관련된 부분, 행안위 돌리는 부분까지 다음 회의까지 말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야 간사 간에 회의 일정과 관련해서 대략 잡은 것에 대해서는 공유 차원에서 다 됐을 텐데요. 다음 주 화요일과 목요일, 본회의 이후에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는 말씀드리고, 다만 안전에 대해서는 아직 의논되지 않아서 그 부분은 추가 간사 협의를 통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정춘생 위원 저는 오늘 하루 종일 소위 하는 줄 알고 준비하고 왔는데 벌써 마무리 하려고 하는 겁니까? 갈 길이 먼데…… 진짜로 저는 오늘 하루 종일 법안심사 할 줄 알고 왔거든요. 그런데 왜 오전에 마무리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회의 끝나고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로 말씀 주실 사항 없으면 시간 관계상 논의를 종료하고 오늘 상정된 법률안은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소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전 심의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여러분, 전문위원을 비롯한 국회 공무원 여러분과 국회 보좌직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산회)

○출석 위원(15인)

김문수 김승수 김은혜 김재섭 김한규 박덕흠 배준영 서일준 윤건영 윤준병
이상식 이해식 임미애 정춘생 조승환

○청가 위원(2인)

송재봉 임종득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조문상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행정안전부

자치분권국장 박연병

○중앙선거관리위원회측 참석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차장 강동완

법제국장 박세진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사무국장 박현도